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55

발의연월일: 2022. 8. 12.

발 의 자:이철규·정운천·구자근

이인선 · 김성원 · 노용호

박덕흠 · 서일준 · 한무경

박정하 · 김학용 · 윤주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,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, 공공단 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.

그러나 현행 「디자인보호법」은 특허심판에서 '이해관계인'만 심판 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심판과정에서 당사자 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'공중의 견'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.

주요내용

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(안 제142조의2 신설)

- 가.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142조의2제1항 신설).
- 나.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(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).
- 다.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선정절차,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(안 제142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2조의2(참고인 의견서의 제출) ①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,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